

「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지원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인구·사업체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·절차 관련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지급과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시행규칙 관련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01. 03. ~ 01. 08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 시 주민 수의 증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미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급하고 대학생·고등학생들에게는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, 이미 경상북도 내 12개의 타 지자체가 전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
- 구미 농산물을 전입 세대에게 지급해 쌀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우리 시와 규모 면에서 비교할 만한 포항시, 경주시 등의 사례를 살펴 구미시 전입지원금 수준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에 거주 중인 기업체 노동자에게도 전입지원금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의 확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.